의정부우체국 제2023-31호

# 2023년도 제5회 의정부우체국 주관
#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최종합격자 공고

2023년도 제5회 의정부우체국 주관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선발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1일

**의 정 부 우 체 국 장**

## 1. 최종 합격자명단

| 응시번호 | 합격여부 |
|---|---|
| 의정부001 | 합격 |

- 최종합격자 채용포기, 결격사유,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## 2. 최종합격자 등록 안내

가. 제출서류

1) 주민등록초본(상세) 1통
2) 운전면허증 사본1통
3) 채용신체검사서 1통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)
※ 2019.12.24.자로 개정된 양식으로 발급 (붙임 서식 참조)
4) 신원보증보험 1통
   - 가입보험금 : 2,000만원 (특별약관Ⅰ,Ⅱ포함)
   - 가입기간 : 3개월 (직종 : 상시계약집배원)
   - 피보험자 : 의정부우체국 (127-83-00079)
5) 반명함 사진 1매

※ 채용 일정은 개별통보되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#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① 구 분 | ② 시험실시기관 | ③ 응시직명 | ④ 응시번호 | ⑤ 성 명 | | 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⑥ 검사 시 | | | | | | |
| ⑦ 재사용 | | | | ⑧ 주민등록번호 | | |

## 검 사 내 용

| 키 | | cm | 체 중 | | kg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허리둘레 | | cm | 혈 압 | | |
| (교정)시력 | 좌: ( ) 우: ( ) | 색 신 (색 각) | | (교정)청력 | 좌: ( ) 우: ( ) |
| 종 양 질 환 | | | 이비인후질환 | | |
| 호 흡 기 질 환 | | | 심 혈 관 질 환 | | |
| 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 | | | 신장/비뇨기계질환 | | |
| 내 분 비 질 환 | | | 혈 액 질 환 | | |
| 신 경 질 환 | | | 피 부 질 환 | | |
| 근골격계 질환 | | | 안 질 환 | | |
| 정 신 질 환 | | | 흉부X선 검사 | | |
| 기 타 | | | | | |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| 검사 결과 합격 여부 | [ ]합 격 [ ]판 정 보 류 | 합격 사유 | |
|---|---|---|---|
| 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 | 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| | |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| 유효기간 | 판정일부터 1년 |
|---|---|

(뒤쪽)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**[응시자]**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*[검진기관]**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 라고 적습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